2023학년도 자율모집 모집안내(안)

1. 모집인원(자율모집1차)

모집학과 \ 전형구분		입학정원	정원내 전형				정원외 전형				
			일반고	특성화고	대학자체	일반전형	대졸 및 전문대졸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차상위/한부모가족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외국인/재외국민
아동학부	유아교육과(3년제)	25				2		1			-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3년제)	40					5	1	1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
관광학부	바리스타과	25	1	2	2	2	5	1	1		
	호텔외식조리과	27	3	3	3	2	5	1	1		
	호텔제과제빵과	40				2	5	1	1		
보건복지학부	간호학과(4년제)	150									-
	치위생과(3년제)	50	1	1	1	2		1			-
	*안경광학과(야간)	28							1		-
	보건행정과	25	3	3		3	5	1	1		전체 입학정원의 2% 이내에서 선발
	미용과	63				2	5	3	1		
	동물보건과	30				2					
	사회복지계열 ■ 청소년가족복지전공 ■ 사회복지상담전공	50					5	2	1		
	* ■ 사회복지경영전공(야간)	30					5	1	1		
	*문헌정보과(야간)	35									
합계		618	8	9	6	17	40	13	9	0	

※ 수시모집 합격자는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은 등록, 미등록, 환불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율모집 2차 모집인원은 정시모집 및 자율모집 1차 등록 결과에 따라 정해집니다. (본대학 입학안내홈페이지 참조)

2. 전형일정

모집구분		자율모집 1차	자율모집 2차
인터넷 원서접수		2023. 1. 13(금) ~ 2. 6(월) 24시	2023. 2. 10(금) ~ 2. 28(화)
		▪ (주)진학어플라이 (http://www.jinhakapply.com) / ☎ 1544-7715 (주)유웨이 (http://www.uwayapply.com) / ☎ 1588-8988 부산여자대학교 (https://ipsi.bwc.ac.kr/index/index.asp)	
교내창구 원서접수		2023. 1. 13(금) ~ 2. 6(월)17시. 입학홍보처	2023. 2. 10(금) ~ 2. 28(화) 17시. 입학홍보처
추가서류제출		▪ 추가서류는 접수 후 2,3일 이내 수시 제출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본 대학 입학홍보처 또는 학과사무실로 제출 - 주소 : 472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 506(양정동) 부산여자대학교 입학홍보처 (귀중) ※ 방문제출 가능시간 : 09시 ~ 17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면접고사		학과 개별 실시	학과 개별 실시
합격자	발표	2023. 1. 31(화) ~ 2. 9(목)까지 수시 발표 - 전화 개별통보	2023. 2. 10(금) ~ 2. 28(화)까지 수시 발표 - 전화 개별통보
	등록	2023. 2. 7(화) ~ 2. 9(목)까지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은행납부	2023. 2. 10(금) ~ 2. 28(화)까지 가상계좌 입금 또는 은행납부

3. 전형별 지원 자격

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사항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정원내	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간호학과는 인문계고(특목고포함) 졸업(예정)자만 지원가능 • 검정고시 합격자(단, 간호학과에 지원불가) • 특목고 출신자(단, 예고와 체고는 간호학과에 지원불가)
	특별전형	일반고졸업자	• 일반계고교 졸업(예정)자 및 종합고등학교 일반계 과정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합격자(단, 간호학과에 지원불가) • 특목고 출신자(단, 예고와 체고는 간호학과에 지원불가)
		특성화고졸업자	•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 종합고등학교 특성화교육과정 졸업(예정)자 • 기타 특성화고교와 교과 과정이 유사한 고교 졸업(예정)자
		대학자체	• 대학자체특별전형 기준에 적합한 자(아래)
정원외	농·어촌학생		[Ⅰ유형]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 소재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입학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본인 및 부모(이혼, 사망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자 [Ⅱ유형] 학생 본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 지역 소재 초·중·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고등학교육시행령 제 29조제2항제14호라목) • 법령상 지원 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만학도 / 성인재직자		•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자 (1998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산업체 재직(근무)경력이 합산 2년 이상인 자 (2023년 2월 28일 기준)
	전문대이상졸업자		•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단, 총 취득학점 62학점 이상인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2호),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제6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 재외국민, 외국인,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결혼이주민)(제7호)에 해당하는 자

가. 대학자체전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지원자격	증빙서류
학과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담임교사의 확인을 받은 자	원서 뒷면의 대학자체전형 확인서 1부
고교 재학 또는 졸업 후 각종 단체 및 기관의 학과관련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모범·효행·선행·봉사·공로 관련 표창이나 상장 등을 수상한 자 (교내도 인정)	상장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여러 개 상장 중 대표적인 상장 사본 1개만 있으면 됨
TOEFL IBT 50점 이상, TOEIC 450점 이상, TEPS 450점 이상, JPT 450점 이상, NEAT 3급 이상, HSK 3급 이상 취득한 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PCT 600점 이상, 일본어 능력시험 3급 이상인 자	해당 성적표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본 대학 관련 학과의 동문(재학생, 졸업생) 확인을 받은 자	원서 뒷면의 대학자체전형 확인서 1부
학과와 관련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자격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부모 또는 배우자의 직업이 학과와 관련 직종인 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및 부모 또는 배우자 재직(경력)증명서 1부
직계가족(모,자매) 중 2명 이상 본 대학을 졸업한 자(재학도 포함)	주민등록등본(또는 호적등본) 및 해당 가족의 본 대학 졸업(재학)증명서 1부
국가보훈대상자(※전형료 면제)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1부(보훈청 발급)
고졸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고졸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외국고교 출신자	해당 외국고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자만)
다문화가정 자녀	- 지원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 또는 모 :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기본 증명서 1부(혼인한 외국인의 모든 국적이 표시되어야 인정함)
장기복무 직업군인 자녀	재직 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가족 증빙서류 1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사회교육원, 전산원)에서 15주 이상 이수한 자	관련과정 수료증명서 1부(기간 명시)

※ 인터넷 원서 접수시 세부전형 체크에 동문확인을 선택하면 학과에서 대학자체전형 동문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이 원서 접수시 대학자체전형에 표시하고 나서 별도의 지원자격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문확인자격으로 처리됩니다.

4. 전형별제출서류

전형구분	구비서류
공통서류(필수)	• 입학원서 (인터넷접수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2015년 2월~202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온라인 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해당자만 고등학교생활기록부사본 1부 (해당자 : 2014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및 학생부성적 온라인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자) • 검정고시 출신자 : 고교졸업시험 합격증명서 및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원본 각

<table>
<tr><th colspan="3">전형구분</th><th>구비서류</th></tr>
<tr><td colspan="3"></td><td>1부씩 또는 사본 각 1부씩을 제출해야함. 단, 대입전형자료 온라인제공에 동의한 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td></tr>
<tr><td rowspan="2">정원내</td><td colspan="2">일반전형, 일반고특별전형
특성화고특별전형</td><td>• 공통서류</td></tr>
<tr><td colspan="2">대학자체전형</td><td>• 대학자체특별전형 증빙서류<p3.대학자체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참조></td></tr>
<tr><td rowspan="6">정원외</td><td rowspan="3">농어촌학생</td><td>Ⅰ유형</td><td>•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확인서 1부(본교양식)
• 지원자, 부, 모의 주민등록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변경된 주소지 내용 모두 포함)
• 확인서에 중학교 학교장직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td></tr>
<tr><td>Ⅱ유형</td><td>• 농어촌학생 지원자격 및 재학사실확인서 1부(본교양식)
• 지원자 본인 주민등록초본 1부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변경된 주소지 내용 모두 포함)
• 확인서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장직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td></tr>
<tr><td colspan="2">☞ Ⅰ유형이든 Ⅱ유형이든 농어촌학생지원자격 및 재학사실확인서에 고등학교장 직인은 반드시 있어야 함.
☞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있는 지원자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확인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함</td></tr>
<tr><td rowspan="2">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td><td>기초생활수급자</td><td>•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td></tr>
<tr><td>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중 택1</td><td>•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확인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중 택 1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장이 발급, 제출일로부터 7일 내외 발급한 서류)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서류)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 위계층으로 인정함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td></tr>
<tr><td rowspan="2">만학도/
성인재직자</td><td>만학도</td><td>공통서류</td></tr>
<tr><td>재직자</td><td>재직(경력)증명서, 직장 4대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가입확인서 중 1부</td></tr>
<tr><td colspan="2" rowspan="2">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
특별전형</td><td>• 성적증명서, 졸업(수료)증명서 각 1부
• 편입이력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까지 제출(아래 ※ 확인)</td></tr>
<tr><td>※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예정)자는 전적대학 학력인정 시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단, 취득학점 62학점 이상인 자)는 졸업증명서 대신 수료증명서(2년 이상 수료기간 명시)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 대신 졸업예정증명서(학점은행제, 학위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수시모집 지원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안 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td></tr>
<tr><td colspan="2">재외국민 및 외국인</td><td>본교 국제교류센터(☎ 051-850-314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 농어촌학생 확인서는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전형방법

1) 면접과 학생부 서류전형으로 선발
2)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불합격 처리됨

6.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인터넷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입학원서는 오기 또는 누락 등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접수(입력)하여야 하며, 접수(입력)한 입학원서와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상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않음

나. 전형료 결제 후 수험번호가 부여되면 정상적인 원서접수가 이루어진 것임

다. 수험표 분실 시 해당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재 출력이 가능함

라. 입학원서를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후 빠른 시일 내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서류 미제출자는 지원 자격 미달자로 불합격 처리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사이트의 안내사항을 참조바람

2) 방문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원서는 흑색 펜으로 작성하여야 함

나. 원서접수 전 원서의 기재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정액은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내용에 두 줄을 긋고 정정내용을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함

7. 지원자 유의사항

1) 입학 원서 등 모든 기재 사항은 작성 요령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본 대학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입학 원서 등의 허위 기재, 제출 서류의 변조, 부정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전· 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함

2) 2023학년도 4년제(산업대학 포함)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수시추가합격자 포함)는 정시모집 및 자율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다만, 4년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정시 모집에 지원하여 합격,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함

3) 접수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예비순위를 부여, 미등록 또는 등록취소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는 대로 입학원서에 기재된 지원자 연락처로 개별 통보함

4) 전화통보 개시 후 정한 일시까지 연락이 두절되는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5) 원서 작성 시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이 책임을 지며, 원서기재사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이 확인되면 등록 및 입학이 취소됨

6)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7) 합격 후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함

8) 수험생에 대한 모든 연락은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합격자 통보, 전형자료 확인 시 필요)로 개별 통보하며 통신연락 두절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9) 원서접수 완료(전형료 결제 시점) 이후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단, 천재지변, 질병, 전형일자의 사후변경, 명백한 지원 자격 미달 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형료 환불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될 경우 전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원서접수 기간 이내에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환불) ※반환금액은 추후 결정합니다

10) 원서 접수시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는 입학전형 및 입시관련 용도로만 사용되고 본 대학 개인정보 보호 방침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 및 폐기됨

11)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12) 전형료는 20,0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자, 국가유공자는 원서접수 시 전형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인터넷 접수 시 대학자체전형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위 전형 외 타 전형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20,000원을 결제한 후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불(인터넷접수 수수료 5,000원 제외한 15,000원 환불)받으시기 바람(문의 : 사무처(051-850-3025~6), 학과사무실)

13) 본 대학은 학업능력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인종적 차이에 따른 특정 학생에 대한 입학 차별 정책이 없음

14)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8. 등록금 환불

1)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학과에 환불신청을 해서 학과로부터 환불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아래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제출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면 접수완료 -> 익일부터 신청계좌로 송금

나. 등록 후 등록금을 환불할 경우 2023. 2. 10(금)부터 2023. 2. 28(화)까지 환불을 신청하여야 전액환불이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등록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반환함

다. 신청 구비서류

①본인이 환불할 경우 : 본인도장, 등록금 환불신청서(환불자 본인 작성 유도), 등록금 납입영수증(또는 등록자 명부 : 학과장 확인도장), 본인 신분증복사본, 본인 입금통장 사본(타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②보호자가 환불할 경우 : 보호자도장, 등록금 환불신청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또는 등록자명부 : 학과장 확인도장), 학생 신분증 사본,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입금통장 사본

2) 환불문의 : 본 대학 사무처(051-850-3025~6), 해당학과 사무실 연락처

3)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 해당 학기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수업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를 반환함

반환 신청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9. 입시 상담 및 문의 전화 번호

- 입시관련 문의 : 입학홍보처(051-850-3221~4, fax.051-850-3228), 각 학과사무실
- 등록 및 환불 관련 문의 : 사무처(051-850-3025~6, fax.051-867-4705), 각 학과사무실
- 신입생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문의 : 학생처(051-850-3015~6, fax.051-850-3029), 각 학과사무실
- 수강신청,수업,전과,휴학,복학 관련 문의 : 학사지원처(051-850-3008~11, fax.051-850-3013), 각 학과사무실
- 취업관련 문의 : 진로취업·창업지원센터(051-850-5924~6), 각 학과사무실
- 면접관련 문의 : 각 학과사무실
- 기숙사(혜지생활관)관련문의 : 혜지생활1호관 051-850-3270, 혜지생활2호관 051-850-3253, 혜지생활6호관 051-850-3214

- 각 학과 및 계열 사무실 연락처

유아교육과(3년제)	850 - 3054	간호학과(4년제)	850 - 3060 850 - 3058	미용과	850 - 3034
아동스포츠재활무용과(3년제)	850 - 3261	치위생과(3년제)	850 - 3209	동물보건과	850 - 3030
바리스타과	850 - 3285	안경광학과	850 - 3241	사회복지계열 - 청소년가족복지전공 - 사회복지상담전공 - 사회복지경영전공(야)	850 - 3052 850 - 3084
호텔외식조리과	850 - 3043	보건행정과	850 - 3256	문헌정보과(야)	850 - 3046
호텔제과제빵과	850 - 3218				